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득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205

발의연월일: 2025. 1. 2.

발 의 자: 강득구·이학영·채현일

송재봉 • 전재수 • 양문석

문대림 · 김기표 · 김 윤

이재정 • 이인영 • 임광현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공공주도로 산업·상업·주거·복지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하여 조성하고 있음.

그런데, 지구 지정·변경 등에 있어 토지 소유자 등 주민의 의견 반영이 어려워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에 있어 주민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주민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도시재생 실행력을 제고 하고자 함(안 제55조의6 및 제55조의7 신설).

법률 제 호
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의6 및 제55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55조의6(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) ① 제41조제3항에 따른 혁신 지구계획의 공람 이후 토지등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 협의체(이하 "주민협의체"라 한다)를 구성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협의체에 주민대표자 회의(이하 "주민대표회의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,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 ·군수·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④ 주민협의체는 주민대표회의의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「선거관리위원회법」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있다.
 - ⑤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5조의7(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지원)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주거

재생혁신지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민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- 1.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
- 2.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임차료 등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 추진에 필 요한 비용의 지원
- 3.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전에 진행하였던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의 지원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주민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고 있는 주민협의체는 제55조의6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.
- 제3조(전체회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고 있는 전체회의는 제5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 <신 설> 제55조의6(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) ① 제41조제3항에 따른 혁신지구계획의 공람 이후 토지등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협의체(이하 "주민협의체"라 한다)를 구성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협의체에 주민대표자 회의(이하 "주민대표회의"라 한다)를 둘수 있다. ③ 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,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④ 주민협의체는 주민대표회의의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「선거관리위원회법」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수 있다.
<u>기막을 다 있다.</u> ⑤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

<신 설>

의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55조의7(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지원)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민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- 1.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・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
- 2.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임차료등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
- 3.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전에 진행하였던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의 지원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 적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